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재나1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자 2023재나137 결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20다3464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나25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소17187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고

담당변호사 윤영선

피고(재심원고) B

변론종결 2024. 11. 27.

판결선고 2024. 12.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소17187 판결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나253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0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N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17187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위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피고의 기왕증 치료를 위한 것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253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2. 13.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4,104,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0. 4.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다3464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4,104,170원은 원고의 직원이 치료비 지급결의를 하여 각 병원에 지불 보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급된 것임에도, 원고는

직원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부당하게 제기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 정본이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20. 4.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무렵 판단누락에 관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2020. 8. 13.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3. 11. 15. 이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진, 판사 박평수, 판사 진현지

1)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3.부터 이 사건 재심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재심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재심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